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종국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4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임종국, 전병주, 박순규,
권순선, 김 경, 이성배,
오현정, 김경우, 채유미,
박기재, 전석기, 최웅식,
송재혁, 이태성, 권영희,
이호대 의원 (16명)

1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개정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.
- 이밖에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, “알기 쉬운

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16조제2호).
- 나.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(안 제17조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및 제24조 중 “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”로 하고, 제7조제3항의 “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제17조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를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주거복지사업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</u></p> <p>4.~10. (생략)</p> <p>제16조 (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</p> <p>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</p> <p>2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제17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</p>	<p>제7조(주거복지사업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「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</u>」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</u>」 제21조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</p> <p>4.~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 (해촉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 내에서</u>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24조(재원) 시장은 <u>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</u>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, 이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대하여는 <u>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</u>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24조(재원) 시장은 <u>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</u>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, 이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</p>